#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41 발의연월일 : 2022. 11. 21.

발 의 자: 유의동・金炳旭・강대식

김학용 • 한기호 • 윤주경

유경준 · 안병길 · 윤한홍

김성원 • 박정하 • 김승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 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 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 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 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조정원의 장"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제4호 중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을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협 ----- 9명 -----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하며, 그 중 상 임위원 1명을 둔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 ③ -----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